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낙동강승마길」조성이 마무리 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관리·운영의 활성화 도모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재산 현황
 - 시설명 : 구미낙동강승마길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30-3번지 외 175필지
(구미시승마장~구미보 구간)
 - 연장 : 17.9km
 - 면적 : 52,362m²
 - 국공유지 하천 46,545m²
 - 매입 1,243m²(5필지)
 - 임차 1,204m²(4필지) - 개인 968m², 농어촌공사 236m²
 - 사업비 : 1,856백만원(국비 821, 도비 246, 시비 789)
- 위탁업무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2018. 2. 1 ~ 2021. 12. 31(4년)

3. 운영 소요예산(2018년) : 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비고
70	29	41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구미낙동강승마길 위탁시설 내역

<시설물>

시설명	물량	비고
승마길	면적 52,362m ² (연장 17.9km)	크로스컨트리 구간, 식생매트, 자연석, 쉼터 등 식재목 등 포함
박스교량	1식	선산 독동 교남천
목책	1식	목초지 구역
크로스컨트리 장애물	25개	
가드레일	2식	승마장, 도방모티
말계류대	3식	승마장, 초곡, 송당
정자	3식	승마장, 도방모티, 송당
이동식 화장실	2식	승마장, 송당
표지석	7개	낙동강승마길 1 하마비 4 시점, 종점 2
안내판	8개	대 2(승마장, 구미보) 소 6(승마장 1, 도방모티 2, 초곡 2, 송당 2, 구미보 1)
표지판	20개	
시비	2개	도방모티 - 강상연구 송당 - 명경당
오물수거함	3개	승마장, 초곡, 송당, 구미보

<토지>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m ²)	비고
취득	옥성 농소 318-4	과	84.0	
취득	선산 신기 67-6	대	361.0	
취득	선산 신기 925	대	287.0	
취득	선산 신기 926	대	400.0	
취득	선산 신기 927	답	111.1	
임차	옥성 농소 산36	임야	725.0	2016.3월 ~ 2026.3월(20년)
임차	옥성 농소 287-3	구거	93.0	2014.11월 ~ 2024.10월(10년)
	옥성 농소 287-5	구거	43.0	
임차	선산 신기 972	구거	100.0	2016.7.25 ~ 2024.11.24(8년4월)
임차	선산 신기 70-1	임야	243.0	2016.11월 ~ 2026.11월(10년)

구미낙동강승마길 현황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위탁 관리·운영) ① 시장은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낙동강승마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유통축산과
입 안 자	과 장	장 상 봉
	담 당	손 이 석
	담 당 자	한 영 주 (480-5834)